궁능유적본부 공고 제2026-262호

2026년 제10차 궁능유적본부(덕수궁관리소) 공무직 등 근로자 공개경쟁 채용 최종합격자 공고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덕수궁관리소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7일

궁능유적본부장

□ 최종합격자

채용분야	직급	최종합격자	
		응시번호	비고
시설물청소원(단시간)	공무직	적격자 없음	
시설물청소원	공무직	청소-03	
안전관리원(단시간)	공무직	적격자 없음	

□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1. 최종합격자는 다음 서류를 준비하여 **2026.10.28.(목), 16:00까지** 덕수궁관리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채용신체검사서 1부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로 가능]
 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붙임 1 서식 작성)
 다. 주민등록등·초본 각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때만 제출, 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라. 가족관계증명서 1부
 마. 사진(반명함판) 1매 및 통장사본 1부
 바.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 붙임 2 서식 작성)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02-751-0702)로 문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붙임 1.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2. 결격사유 확인서 1부

[붙임 1]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덕수궁관리소)

2. 이용사무(이용목적) : 신규채용 및 인사업무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행정정보명	연번	행정정보명
1	주민등록표 등·초본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123456-1234567*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년 *○○* 월 *○○*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010-○○○○-○○○○*

[붙임 2]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덕수궁관리소 공무직 등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공정채용기준 제25조(채용결격사유)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①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기관으로부터 징계 해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③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④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년 월 일

채용예정자: (서명)

궁능유적본부장 귀하